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2호)

- 2018. 09. 07.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08.24.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08.31.
- 다. 상 정 일 자 : 2018.09.07.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 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을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상 설립인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충열)

■ 본 개정안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이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1)’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켜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확대

안 제8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2), 즉 설립인가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같은 법 제105조의23)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3)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같은 조 하단은 “현행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고 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8조(세율)제1항4)은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에 대한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1단에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고 하여,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최저세액을 11만2천5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도 이에 맞춰 등록면허세 감면 기준을 “11만2천5백원 미만”에서 “11만2천5백원”으로 변경하여 11만2천5백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4)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은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은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5)은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제2호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자송달’,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를 모두 포함)’,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10.12.27.][제목개정 2017.12.26.]

※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 변동표

현 행		개 정	
고지서 1장당 공제가능 범위		고지서 1장당 공제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	자동이체(계좌 + 신용카드)	15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계좌 + 신용카드)	500원
		전자송달(신설)	150원

■ 종합검토의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나 본 조례 개정으로 구민들이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답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질) 서초구에 사회적협동조합이 14개 있고, 이들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이 2018년 추계 4건에 104만 1,120원 정도 되는데, 개정된 자동이체 규정으로 인한 감면액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답 : 올해는 자동이체 건으로 9,073건에 273만 9,600원을 감면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주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